



[ 일반채용 | 101경비단 | 경행경채 ]  
[ 법학경채 | 경찰간부 시험대비 ]

# 네친구 장정훈 경찰학

www.miraeij.com

장정훈의 T(OP)&T(OE) 경찰학

[cafe.daum.net/tntpolice](http://cafe.daum.net/tntpolice)



# 목차

## 01 | 경찰과 경찰학

### 제1절 경찰의 개념 ..... 6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6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8
3. 경찰의 분류 ..... 10

### 제2절 경찰의 임무 ..... 11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11
2. 경찰의 사무 ..... 12
3. 경찰의 임무 ..... 13

### 제3절 경찰의 관할 ..... 17

1. 사물관할 ..... 17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 17
3. 지역관할의 예외 ..... 17

###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 19

1. 민주주의 ..... 19
2. 법치주의 ..... 19
3. 인권존중주의 ..... 19
4. 정치적 중립주의 ..... 23
5. 경영주의 ..... 23

### 제5절 경찰과 윤리 ..... 24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 24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 24
3. 경찰의 일탈 ..... 25

4.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 27
5.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 28
6. 경찰윤리강령 ..... 29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35
8.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 39

### 제6절 경찰의 적극행정 ..... 44

1. 적극 행정의 의의 ..... 44
2. 적극 행정의 판단기준(적극행정 운영규정) ..... 44
3.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44
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훈령) ..... 45

### 제7절 범죄원인과 범죄예방(범죄학) ..... 46

1. 범죄의 의의 ..... 46
2. 범죄원인론 ..... 46
3. 범죄통제론 ..... 48

### 제8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 52

1.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K.Sparrow) ..... 5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 ..... 53
3. 순찰 ..... 54

## 02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 제1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55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55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56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56

### 제2절 일제강점기 경찰 ..... 57

1. 헌병경찰시대 ..... 57
2. 보통경찰시대 ..... 57

2.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226
--	-----

**제8절 경찰홍보** ..... 226

1. 경찰홍보의 유형	226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27

**제9절 경찰통제** ..... 229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29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 경찰통제	230

**06 | 분야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 ..... 235

1. 지역경찰활동	235
2. 생활질서업무	243
3. 청소년 및 여성보호	249

**제2절 수사경찰** ..... 25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3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5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스톱킹처벌법)	268
5. 마약사범 수사	271
6.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2

**제3절 경비경찰** ..... 273

1. 경비경찰일반	273
2.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274
3. 선거경비	275
4. 재난경비	276
5. 국가중요시설경비	279

6. 다중범죄진압경비	280
7. 경호경비(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	280
8. 대테러경비	281
9. 경찰작전	283
10. 청원경찰	287

**제4절 교통경찰** ..... 290

1. 교통경찰일반론	290
2. 교통경찰활동	294
3. 차마의 통행방법	298
4.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00
5. 교통사고의 처리	306

**제5절 공공안녕 정보경찰** ..... 312

1. 정보일반	312
2.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제36조~37조)	314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14

**제6절 안보경찰** ..... 326

1. 국가보안법	326
2. 보안관찰	330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34
4.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35

**제7절 외사경찰** ..... 338

1. 외사경찰의 대상	338
2. 외사경찰활동	346
3. 국제경찰공조	348

# 경찰과 경찰학

## 제1 절 경찰의 개념

###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1. 대륙법계 경찰개념 (전통적 개념)

##### (1) 의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23 채움, 18 경간]

##### (2)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특히, 독일) [24 경간]

▶ 계몽주의와 법치주의 사상 등장 →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범위 축소

##### 1) 고대 경찰

경찰이란 용어는 그리스어 politeia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가장 이상적 상태인 헌법을 의미 [23 승진 18 경간]

##### 2) 중세 경찰

- ①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la police) - 초기 국가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 의미했다가 나중에 '공동체의 질서있는 상태' 의미
- ②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15세기 말 독일로 계승, 질서유지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의미 [17·22 경간]  
- 경찰과 행정의 분화 X
- ③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 경찰은 교회행정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 [18 채움, 23 법학, 14 승진, 17 경간]

##### 3) 경찰국가시대 (절대주의 국가)

- ① 17세기 국가작용 분화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 등과 분리되어 내무행정만 의미 [14 승진, 18 경간]  
- 외교·군사·재무·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식 [23 채움]  
▶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 사법행정이 경찰로부터 분리 [22 채움]
- ② 소극적 위험방지 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증진 위해서도 강제력 행사 [18 경간]

#### 4) 법치국가시대

<b>질서행정</b>	① 18세기 후반 <b>계몽철학이 사상적 기초</b> ② 경찰개념은 내무행정 가운데서도 <b>소극적 위험방지(질서행정)에 한정</b> [19 승진] ▶ 1776년 J.S.Pütter - 경찰의 임무는 긴급한 위험방지 ○, 복리증진은 경찰의 임무 X [22 채용]	
<b>관련법령 및 판례</b>	프로이센 「 <b>일반란트법</b> 」 (1794)	<b>공공의 평온</b> , 안전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b>질박한 위험</b>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 [12·18·19·23 채용, 18·19 승진, 13·14·20·21 경간]
	프랑스 「 <b>죄와형벌법전</b> 」 (1795)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b>안전</b> 을 유지하는 것이 임무” [19 채용, 13 승진, 14·20 경간]
	프랑스 「 <b>지방자치법전</b> 」 (1884)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b>위생</b> 을 확보함이 목적( <b>소극목적에 한정하였으나 위생사무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포함</b> ) [19 채용, 18 지능범죄, 13·14·17 경간]
	프로이센 「 <b>경찰행정법</b> 」 (1931)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협하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b>의무에 합당한 재량</b> 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19·22 채용, 13 승진, 14·18 경간]
	크로아 <b>자베르판결</b> (1882)	경찰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된다는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 (경찰작용의 목적 <b>축소</b> ). [19·23 채용, 18 승진, 13·17·18·20·21 경간]

두문자  
일절

두문자  
치위생

#### 5) 비경찰화

2차 대전 이후 **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비경찰화과정 거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에 국한  
 [15·22 채용, 14 승진, 17 경간]

#### 정리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 → ‘내무행정’ → ‘위험방지’ → ‘보안경찰’ 순으로 변화

### 2. 영·미법계 경찰개념 (현대적 개념) [24 채용]

- ①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 위임
- ② 시민위해 법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의 기능 및 역할 중심으로 형성** [23 채용, 18 경간]
-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중점

###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비교

구분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권의 기초	일반통치권	자치권
경찰의 개념	① 경찰권발동범위와 성질 기준 ② 경찰이란 무엇인가	① 경찰의 역할과 기능 기준 ② 경찰활동 무엇인가 [19승진]
시민 관계	경찰권과 시민권의 대립관계 [18채움]	경찰권과 시민권의 동반자 관계
경찰의 사명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의 임무 X	범죄수사가 당연히 경찰의 임무 O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O	구분 X

- ▶ 대륙법계 - 경찰권발동범위 제한하는 과정
- ▶ 영미법계 - 주민안전 위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찰개념 발전·확대

### 4. 한국경찰개념의 형성

대륙법계의 영향	① 프랑스법의 경찰권의 관념은 독일의 경찰관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찰개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②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일본 「행정경찰규칙」(1875년)→ 우리나라 「행정경찰장정」(1894년)
영미법계의 영향	① 미군정기에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이념 도입 ②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

▶ 1953년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개념이 모두 반영

##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4·15·17채움, 18지능범죄, 14·15·24승진, 14·24경건]

### 1. 의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실무)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달성 위해 행해지는 모든 경찰활동 [15·17·23채움, 18지능범죄, 15·20·24승진]
실질적 의미의 경찰	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 작용 [23법학, 15·19·20·24승진] ▶ 견해대립 -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견해(경찰학계) 있음 ②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18·20채움, 14·15·20·21승진]

###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17·20채움]

- ① 조직 중심 - 보통경찰기관에서 하는 일체의 작용
- ② 실정법적 개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실무상 개념, 제도적 개념
-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 O [23채움, 19승진]
- ④ 다른 행정 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 할 수 없음 [17채움]

**03 경찰의 분류** [18 채용, 14 승진, 13 경진]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 3권분립에 따른 구분** [18 · 21 채용, 22 경진]

행정경찰	사법경찰
① 공공질서유지 · 범죄예방목적 - <b>현재 · 장래사태</b> 에 대한 작용 [13 경진] ② <b>경찰행정부규</b> 에 근거 ③ 경찰청장(해당 주무부서의 장)의 지휘아래 수행 ④ <b>실질적 의미의 경찰</b> ○	① 범죄수사목적 - <b>과거사태</b> 에 대한 작용 [13 경진] ② 「 <b>형사소송법</b> 」에 근거 ③ 국가수사본부장(수사부서의 장)의 지휘아래 수행 ④ <b>형식적 의미의 경찰</b> ○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최초 구분 - 프랑스의 「**외와형법법전**」 [21 채용, 20 경진]
- 우리나라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아래 있는 조직이며, **우리나라는 조직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없음** →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 모두 담당 [21 채용]

▶ (광의의) 행정경찰(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안경찰 + 협의의 행정경찰

**2. 보안경찰(치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18 · 21 채용, 18 지능범죄, 21 · 22 경진]

보안경찰	의의	① 사회공공의 안녕 ·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 동반 X, 오직 경찰작용만으로 하나의 독립행정부문 형성 ② 조직상 <b>보통경찰기관이 담당</b>
	예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의의	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 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 · 질서 유지 위한 작용 ② 조직상 <b>다른 행정기관이 담당</b>
	예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경제경찰, 위생경찰, 보건경찰 등

 **정리** 비경찰화 [15 · 18 채용]

- 행정경찰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구분의 계기 - 비경찰화 현상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 [18 · 21 · 23 채용, 21 경진]

예방경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의 보호조치, 총포 · 화약류의 취급제한, 순찰활동 등
진압경찰	범죄의 제지 · 진압, 범죄수사, 피의자 체포 등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16·20·21·23 채용, 22 법학, 18·21·23 경간]

	국가경찰	자치경찰
장점	①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확보 ② 명령계통의 일원성과 통일적 지휘체계 확보 ③ 다른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 원활 ④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 대응 ⑤ 전국적으로 정확·유용한 통계자료 확보	①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 가능 ② 조직체계나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 ③ 민주성 보장으로 주민들의 지지받기 쉽다. ④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 높다.
단점	① 지역적 특수성과 창의성 저해될 수 있다. ② 정부의 특정 정책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날 우려 ③ 관료주의화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 곤란	① 전국적 기동성이 약하고, 국가위기기 신속대처 곤란 ② 정확·유용한 통계자료 확보 곤란 ③ 다른 경찰기관,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 응원체제 곤란 ④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 대응곤란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치경찰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 위해정도·적용법규·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21·23 채용, 21·22 경간]

6.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강제력 사용유무)에 따른 구분 [18·21·23 채용, 21·22 경간]

7.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사회적 가치나 이익(경찰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따른 구분(프랑스에서 유래) [24 채용, 22 경간]

제 2 절 경찰의 임무

0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2·21 채용]

경찰의 임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5 채용]	직무의 범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피의자 X)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치안정보 X)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18 채용] 3. 경비·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02 경찰의 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 국가경찰의 사무**

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자치경찰사무는 제외

**2. 자치경찰의 사무**

법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22 채점]

**두문자**  
교생다수

<b>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b>	①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2 채점] ②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22 채점] ③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④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2 채점]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b>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b>	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2 채점] ②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심의·설치·관리 [22 채점] ③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④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⑤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⑥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두문자**  
경실아  
성공(하)면  
학교가

<b>다음에 해당하는 수사사무</b>	① <b>학</b> 교폭력 등 소년범죄 [22 채점] ② <b>가</b> 정폭력, <b>아</b> 동학대 범죄 [22 채점] ③ <b>교</b> 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④ 「형법」상 <b>공</b> 연음란 및 「 <b>성</b>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b>다</b> 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X) [22 채점] ⑤ <b>경</b> 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⑥ <b>가</b> 출인 및 <b>실</b> 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

**주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 자치경찰사무 중 ①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②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③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22 채점]
-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자치경찰사무와 사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  
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범죄  
▶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와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범죄 - 자치경찰의 수사범위에 포함 X  
나. 「형법」 제257조(상해),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폭행)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18조(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의 범죄

**03 경찰의 임무**

-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 경찰기관에 부여된 임무를 전제로 한 개념
- ▶ 경찰의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수사', '그 밖에 서비스 등 적극적 보호활동'
-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경찰의 본질적이고 궁극적 임무 [17 채용, 20 승진]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위험한 행위나 위험한 물적 상태의 대상(객체)과는 구별된다.

(3) 위험 (경찰개입의 전제조건) [21 채움, 15·18 승진, 15 경간]

의의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 [18 승진, 21 경간 - 위험의 원인이 인간의 행동인지, 자연력인지는 불문]	
손해 [24 승진, 19 경간]	① 보호받는 개인 및 공공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② 보호법익의 현저한 침해행위 -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손해 X [20 승진]	
분류	구체적 위험	구체적 개별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존재
	추상적 위험	①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 사례) ②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도 단순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실적 관점에서 <b>위험에 대한 예측이 필요</b> [24 승진]
▶ 경찰의 개입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 → 사전배려원칙 적용 X [17 채움, 23 법학, 18 승진, 19 경간 다만, 범죄예방분야나 장래 위험방지 위한 준비행위는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임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 [23 채움]		
위험과 법익	①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을 위한 최소의 전제조건 ② 경찰개입 위해 사실적·물리적 위험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님 [20 채움] ③ 위험은 보호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b>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b> ④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 → 사회법치국가 아래서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개입하므로 <b>경찰의 위험방지 활동영역이 확장</b>	
위험에 대한 인식	①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b>주관적 추정 포함</b> - 주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객관화 이루는 사전판단 필요 [24 승진] ②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b>사전적 관점(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현재의 인식상황에 따라서 판단)에서</b>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경찰작용을 통제할 경우에도 사후에 사건이 실제로 진행된 경과에 근거하여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③ 위험의 예측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은 <b>'손해의 정도와 손해발생의 개연성은 반비례한다는 원칙'</b> 이 적용될 수 있다. -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면, 그 개연성의 정도가 낮아도 위험 긍정할 수 있고, 반대로 손해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클 경우라야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른 분류 [22 채움, 18·20 승진, 19 경간]	<b>위험에 대한 인식과 사실이 불일치 하거나 불확실한 경우</b>	
	외관적 위험	① 경찰이 <b>행위시점에 위험상황이 확실하다고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하여 개입</b> → 실제로는 위험 존재 X ② <b>외관적 위험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적법한 경찰개입</b> → <b>손해배상 문제 발생 X, 형사책임 X, 단, 국가의 손실보상책임 발생가능</b> [19 법학, 20·23 채움, 18·20 승진, 21 경간]
	오상 위험 (추정적 위험, 상상적 위험)	① <b>이성적·객관적 판단한다면 위험의 외관 X, 혐의도 정당화 X</b>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존재를 잘못 추정 [19 법학, 18 승진, 19 경간] ② <b>경찰의 개입은 위법</b> → <b>손해배상 문제 발생가능, 민·형사책임문제도 발생가능</b>
	위험 혐의	① 경찰이 <b>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실제발생여부가 불확실한 경우</b> [19 법학, 20 승진] ②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는 예비적으로 행하는 <b>위험조사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b> ③ 위험혐의의 경우 <b>위험조사차원에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적법.</b> 따라서, 책임문제는 <b>외관적 위험과 동일</b> [18·24 승진]



## 참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다수의견 : 현존성 X, 명백성 O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X)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 2. 대법원 판례

#### (1)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일 것을 요구

#### (2)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 1. 17, 2015다236196).

## 2. 범죄의 수사 - 수사법정주의

- ① 비범죄화(간통제 폐지 등)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범위는 축소되나, 과범죄화(종래 가정이나 사회의 자율영역이었던 분야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벌 -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범죄로 규정되는 신범죄화(환경범죄,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활동 분야 증가
- ② 오늘날 사회적 법치국가 아래서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적극적 수사권발동을 인정하는 입법례 증가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수사는 전통적인 사법경찰활동에 따라 수행하나,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인 응급조치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 증가추세** [24 경간]

## 3. 그 밖에 서비스 등 적극적 보호활동 -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경찰의 임무로 강조

- ①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 -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영역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권력적 작용을 통한 적극적인 경찰개입 증가
- ② 「경직법」 ‘손실보상규정(제11조의2)’과 ‘소송지원규정(제11조의4)’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정



## 참고

맵 판결(Mapp v. Ohi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확립 [23 경간]
에스코베도판결 (Escobedo v. Illinois)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23 경간]
미란다 판결 (Miranda v. Arizona)	진술거부권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블랑코(Blanco)판결	공무원에 의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최초인정. 그 책임에 관한 소송은 행정재판소 관할이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음 [23 경간]
띠톱판결	경찰개입청구권 최초 인정

### 제 3 절 경찰의 관할

#### 01 사물관할 [17·20·23 채움]

의의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
특징	① 「국자법」 제3조에 규정된 경찰임무가 사물관할 ② 우리나라는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직법적인 임무규정이 포함 ○ ③ <b>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는 것은 영·미 법계 영향</b>

#### 02 인적관할(공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23 채움]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
- ▶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03 지역관할의 예외

##### 1. 국회 [16·22 채움]

- ① 국회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 ② 국회의장은 국회경호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얻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요구 가능 [19경대]
- ③ 경위는 회의장 안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건물 밖**에서 경호 [14채움]
-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은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 받음.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없이 체포 불가** [14·17·20 채움, 15·17·19 경대]

##### 2. 법정 내부 [17·19·23 경대]

- ①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요구 기능**
- ②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내외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경찰서장 X)의 지휘 받음**

### 3. 치외법권 영역

- ①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사택, 승용차·보트·비행기 등도 불가침 [15·19 경2]
- ② 외교사절 요구나 동의 없는 한, 경찰은 출입 X
- ③ 화재나 감염병 발생처럼 긴급한 경우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관습(국제법 X) [14·20 채용]



#### 참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p>「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p>	<p>제22조 1.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7조 제5호 :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p>
<p>「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p>	<p>제31조 영사관사의 불가침 1. 영사관사는 본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불가침이다. 제41조 제1호 :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권한있는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5호 : 영사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p>

### 4. 미군영 내

- ① 미군영 내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미군 당국이 보유
- ② 한국경찰은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범죄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 추적시 미군 시설 및 구역 안에서 범인체포 가능 [20 채용·15 경2]
- ③ 대한민국은 미군당국 동의 없으면 시설·구역 내에서 사람·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구역 내외 불문 미국 재산 압수·수색·검증 불가 - 대한민국 당국 요청있으면 미군당국은 필요한 조치 취하여야 함

## 제 4 절 경찰의 기본이념 (가치)

### 01 민주주의

법적 근거	①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small>[22 채움]</small> ② 경찰권은 국민의 위임에 근거한 것
민주화 방안	대외적 ①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마련 - 국가경찰위원회제도, ‘국민감사 청구제도’ 등 ② 경찰활동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 성과급제 - 민주화 방안 X [21 경2]
	대내적 ① 내부적 민주주의도 중요 ② 경찰조직 내부의 적절한 권한분배,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 02 법치주의

-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법령 X)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21 경2]

### 03 인권존중주의

#### 1. 법적 근거

- ①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②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2 채움]
- ③ 「국자법」 제5조 -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X) [21 경2]
- ④ 「경찰법」 제1조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⑤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더욱 중요한 이념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 포함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21 경관]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③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22 채용, 22 경관]

### ■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 [23 채용]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 침해하는 것 [22 채용]
3. “조사담당자”란 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 제2장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

**제3조(설치)**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 높여 인권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하여 운영 [22·23 채용, 24 승진]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이때,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23 법학, 24 경관]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23 법학]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23 채용]
- ④ 위촉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있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위촉.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교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거나 그러한 단체로부터 인권위원으로 위촉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천 받은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사람

#### 4. 「경찰관 인권행동강령」(경찰청훈령 ○, 대통령령 X)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적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성적(性的) 지향 X)**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 04 정치적 중립주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2 채점]

#### 05 경영주의

0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24 경간]

도덕적 결의의 강화	① 경찰관이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② A형사에게 사건관련자가 돈을 주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하자 돈을 받았다면 이는 도덕적 결의가 약화된 것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①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것 ② 지구대에 거지가 찾아왔을 때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이 욕설과 험담을 하면서 거지를 쫓아냈다면 도덕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① 경찰이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② 가장 중요한 목적

0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과 전문직업화

1.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24 채용]

(1)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the crimefighter model)

의의	법 집행 통한 범법자 제압측면 강조. 시민들은 범인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 인식	
장단점	장점	경찰은 범죄자와 싸우는 자로 경찰역할을 명확히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
	단점	① 전체 경찰업무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 ② 범법자는 적,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재판하기도 전에 경찰이 범법자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2)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service worker model)

- ① 범죄와의 싸움도 치안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을 강조
- ② 치안서비스란 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
-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 2. 경찰의 전문직업화

(1) 추진 :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 등에 의하여 추진

(2) 경찰 전문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22 채용, 18 승진]

부권주의	전문가가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소외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b>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b>
차별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 교육과 비용이 들어, <b>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 차단</b>
사적 이익 이용	전문직들은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상당한 사회적 힘 소유하지만, 이러한 힘을 <b>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서만 이용</b>

### 03 경찰의 일탈

#### 1. 시민들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허용론	형성재이론 : 작은 호의가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서먼) [22·23 채용]	<p><b>부패에 해당하지 않는</b>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15·17·19·20 채용, 18·20·24 승진, 15·21·22 경진]</p> <p>▶ <b>펠드버그</b> - 대부분의 경찰들은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으로 '관념적 가설'에 불과 [18 승진]</p> <p>▶ <b>델라트르</b> -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b>작은 호의 금지</b>해야 한다. [20 승진]</p>

#### 2. 경찰의 부정부패

(1) 부정부패의 정의 (하이덴하이머의 분류) [22 법학]

관직중심적 정의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b>금전적인 형태일 필요 없음</b> 이며 <b>사적인 이익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b>
시장중심적 정의	<b>고객이 위험 감수하고 이익 받는 것을 확실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b> [23 채용]
공익중심적 정의	관직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에 의하여 그런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위함으로써 <b>공중의 이익에 손해</b> 가져올 때 부패 발생

① 부패행위는 권위의 남용뿐만 아니라 권위의 적절한 사용의 형태로도 이루어짐

② 권한남용은 물론 **적법한 권한행사라도** 사적인 이익의 동기가 개입되고 사적이익이 결부되면 부정부패

## (2) 부패의 유형

백색 부패	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례화된 부패(불경기인데 국민들 동요나 기업활동위축 방지 위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 한 경우)
흑색 부패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로서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 끼치는 부패(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
회색 부패	① 백색부패와 흑색부패 중간. 흑색부패로 발전할 잠재성 지닌 것(적은 액수의 호의 표시나 선물 또는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제공하는 음료수나 과일) ② 사회구성원 가운데 특히 엘리트층 중심으로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부패(정치권에 대한 후원금)

## (3) 부정부패의 원인 [14 · 15 · 17 · 18 · 20 · 22 · 23 채용, 18 지능범죄, 18 · 24 승진, 18 경간]

전체 사회가설 [22 채용]	① <b>월슨</b> [18 승진] ②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 - <b>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b> [17 · 18 · 23 채용, 18 지능범죄, 18 · 20 승진, 18 경간] ③ <b>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b>
구조 원인가설 [22 채용, 24 승진, 23 법학]	① <b>니더호퍼, 로벅, 바커</b> [23 채용] ② <b>신임경찰들이 선배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b> [23 채용, 18 승진, 22 경간] ③ 부패관행이 경찰조직 내부에서 <b>침묵의 규범</b> 으로 받아들여짐 ④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b>법과 예산 및 현실의 괴리현상 발생</b> - 기소중지자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 출장비 수령,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시간 외 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⑤ 부패 원인 - <b>개인적 결함 X, 조직의 체계적 원인 O</b> [18 승진, 21 경간]
썩은 사과가설 [24 승진]	① <b>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유입됨으로써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 있다는 이론</b> [16 · 17 · 18 채용, 18 · 20 승진] ② 부패 원인 - <b>조직의 체계적 원인 X, 개인적 결함 O</b> [24 승진, 18 · 21 · 22 경간]

① '봉급 제외하고 깨끗한 돈이라는 건 없다' - 패트릭 머피(전 뉴욕시경 국장) [23 경간]  
② '경찰인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월슨(O. W. Wilson) [23 경간]

## (4)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 (whistleblowing) [21 경간]

의의	①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b>외부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b> [15 경간] ② <b>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b> [18 경간]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 (클라히니히) [24 채용]	① 적절한 도덕적 동기 - 개인의 출세, 보복하려는 동기 등은 정당화 X ②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b>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b> ③ 어느 정도의 <b>성공가능성</b> ④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 하였는지 확인 ⑤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을 세심하게 고려 ▶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조직에 대한 충성의무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 양자 고려

▶ 주의할 용어 [20·22 채움]

- ①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 -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13 승진]
- ② **침묵의 규범** -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 **휘슬블로잉과 반대개념**
- ③ **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 구별)
- ④ **Dirty Harry문제** -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 [22 채움]
- \* **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23 채움]
- ⑤ **예기적 사회화 과정** -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의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수험생이 부패뉴스를 보며 “저런 경찰은 되지 말자”라고 다짐) [22 경재]
- ⑥ **보상적 윤리기설** - 비윤리적 행위는 도덕적 부채 유발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선한 후속행위 초래

**04**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 [20 채움, 18 승진]

<b>원인</b>	①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b>신념결여(가장 큰 원인)</b> ②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할 때 ③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 <b>니더호퍼(Niederhoffer)</b> -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제가 붕괴된 후 <b>새로운 신념체제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급하게 대체될 때 X)</b>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23 채움]		
<b>회의주의와 구별</b> [11 채움]	<b>공통점</b>	<b>냉소주의</b>	
	<b>차이점</b>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① <b>합리적 근거 X</b> [23 채움] ② <b>대상 특정화 X</b> ③ 개선의지 X	<b>회의주의</b>  ① <b>합리적 의심 ○</b> ② <b>대상 특정화 ○</b> ③ 개선의지 ○
<b>폐해</b>	①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이탈현상 초래 ② 극단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 조장 ③ 경찰의 전문직업화 저해 [23 채움]		
<b>극복방안</b>	① 중요 의사결정 때 부하의 의견을 청취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하의상달') ④ '맥그리거'이론 중 <b>Y이론에 입각한 조직관리</b> [20·23 채움]		

## 05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 1.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경찰인의 윤리표준) - 로크의 사회계약설

자연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기에는 자유·평등·정의가 지배 → 인간관계 확대로 인해 자연권의 유지가 불안</li> <li>②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안전 결여</li> </ul>
사회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왕에게 자연권의 일부양도 - 개인의 자연권의 보장</li> <li>② 자연상태 결함으로 인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 결성함</li> <li>③ 사회계약 통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힘을 사용할 권한을 정부(정치기구)에 부여</li> </ul>

###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코헨과 펠드버그) [21 채용, 14·18 승진]

#### (1) 공정한 접근 (fair access)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찰은 사회전체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 → 경찰서비스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 허용 : 성·연령 및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 거부·차별 금지</li> <li>② 공정한 접근보장에 위배되는 유형 : 편들기, 서비스의 해태 및 무시 등 [23 채용]</li> </ul>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지역과 B지역에 대한 순찰근무 부여받은 경찰이 B지역에 친척 산다는 이유로 순찰시간 대부분 할애</li> <li>②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li> <li>③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가난한 동네는 가지 않고 부자동네인 구역만 순찰</li> </ul>

#### (2)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의의	<p>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행사 제한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에게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은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p>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민들은 치안을 경찰에 맡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한 <b>자력구제하면 안 된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내가 지갑을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직접 지갑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 체포 - 공공의 신뢰를 갖고 경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 [21 경2]</li> </ul> </li> <li>② 시민들은 경찰이 반드시 법집행할 것 신뢰 → 경찰은 국민의 신뢰 저버리는 행동하면 안 된다. [21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A순경은 강도범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둔 경우 - 공공의 신뢰 위반 [17 경2]</li> <li>예 사건축소하거나 사건 은폐 - 공공의 신뢰 위반</li> </ul> </li> <li>③ 경찰관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하거나 물리력 과다사용 금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 [21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 공공의 신뢰 위반 [17·21 경2]</li> </ul> </li> </ul>

### (3)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safety and security)

①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목적달성 위한 수단에 불과 [23 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중인 경찰관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폭주족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 생명과 재산 안전에 위해</li> </ul>
② 위기상황에서 경찰은 현재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은행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차량도주시,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법집행)을 하여야 한다.</li> </ul>

### (4) 역할한계와 협동 (teamwork)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찰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범위 내에서 행동, 상호 협력 통해 경찰목적 달성</li> <li>② 협력의무는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필요</li> </ul>
예	경찰관이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도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 - 협동 위반 [23채움, 21경건]

###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objectivity)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 이익 위해 노력 → 업무수행시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치우치면 안됨</li> <li>② 과도한 개입이나 냉소주의는 허용되지 않음</li> </ul>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순경은 경찰 되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경찰되어 절도범 검거하였는데, 과거 도둑맞은 경험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 -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위해 [17·21 경건]</li> <li>②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경험한 B경찰관이 가정문제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 - 냉정하고 객관적 자세 위해 [23 채움, 17·21 경건]</li> </ul>

## 06 경찰윤리강령

### 1.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23 법학, 14·19·21 승진]

실행가능성 문제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 미흡[24 채움]
냉소주의 문제	경찰강령은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되어 냉소주의 야기[24 채움]
최소주의 위험	경찰관이 최선 다하여 헌신과 봉사 하려다가도 경찰강령에 포함된 정도 수준으로만 근무하여 경찰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이 됨
비진정성 주장	경찰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상세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결정 기준이 못됨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강령이 무슨 무슨 행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 의도나 동기 소홀히 함

2. 우리나라 경찰윤리헌장(1966) → 새경찰신조(1980) → 경찰헌장(1991) → 경찰서비스헌장(1998)[24 채움]

<p>경찰서비스헌장 [12경대]</p>	<p>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p>
<p>경찰헌장 [10·17채움, 13·15·19·21·23승진]</p>	<p>1.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b>친절한 경찰</b>이다. 1. 우리는 <b>정의</b>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어떠한 불의나 불법고도 타협하지 않는 <b>의로운 경찰</b>이다. 1. 우리는 국민의 <b>신뢰</b>를 바탕으로 오직 <b>양심</b>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b>공정한 경찰</b>이다. 1. 우리는 <b>건전한 상식</b> 위에 전문지식을 갖고 닦아 맡은 바 일을 <b>성실</b>하게 수행하는 <b>근면한 경찰</b>이다. 1. 우리는 <b>화합</b>과 <b>단결</b>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b>깨끗한 경찰</b>이다.</p>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훈령) [15·17·18·22채움, 14·18·19승진]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도경찰청, 경찰서 포함)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승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예산·심사평가업무 담당자와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15·17·18·23채움, 14·18·19·20승진]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0승진]

③ 상담 요청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하여 지시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다만, 지시 내용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한 상급자가 스스로 지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승진]